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자 회의



일시: 2019. 8. 28.(수), 14:00

장소: 잠실실내체육관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목 차

I. 경기운영	1
1. 경기 방법	1
2. 토너먼트 경기 운영	2
3. 채점 방법	3
4. 경기운영 관련 규정	5
5. 국가대표 선수 및 군 입·제대 관련 교체	7
6. 부상선수 교체 및 처리	7
7. 안전사고 예방, 도핑 및 소양 교육	8
8. 열람 확인 및 이의 신청	9
9. 부정선수 출전 근절	10
10. 도핑검사계획(안)	10
11. 종합시상 및 종목별 시상 계획	13
II. 대진추첨	14
1. 주의사항	14
2. 대진추첨 조 편성	14
3. 대진추첨 요령	14
III. 개최 관련 협조사항	16
IV.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계획(붙임)	

1. 경기 운영

1

경기 방법

가. 시도 대항전으로 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토너먼트 경기로 하되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또는 5, 6, 7, 8위전)은 실시하지 않음(동률 3위, 5위)
- 2) 토너먼트로 진행하는 단체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종목 및 개인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 시·도 선수 또는 팀에만 배정
- 3) 승부는 경기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 결정
다만, 경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운영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

다. 심판 및 경기규칙

- 1) 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심판원을 배정·운영
- 2) 경기규칙은 해당 회원종목단체별 경기규칙 적용
- 3) 경기운영은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를 준용

가. 시드배정

- 1) 단체경기종목, 개인경기단체종목, 개인경기종목의 토너먼트 경기에 대한 시드는 개최지인 서울특별시에만 배정
- 2) 다만, 개최지 가산채점에 따라 우슈의 산타종목은 개최지 시드배정에서 제외

나. 개인경기단체전 종목 경기 운영

- 1)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의 경기에서 경기 직전에 제출한 오더순서와 다른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선수만 패한 것으로 함
- 2) 경기 직전에 제출한 오더 중 동일선수 제출로 인해 문제 발생 시 해당선수는 후순위로 제출한 경기만 패한 것으로 함

다. 재외한인체육단체 참가 운영

- 1) 대진추첨 후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내규가 정하는 경기순서에 따라 부전승 시도와 경기 진행. 다만, 대진추첨 전에 참가 신청을 하여 참가신청한 시도와 동일하게 대진추첨 가능할 경우 맨 마지막 순서로 대진추첨 진행
- 2) 해당종목: 개인경기종목 토너먼트 경기(복싱, 레슬링, 유도 등)

가. 채점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에 따라 실시

나. 시범종목은 채점대상에서 제외

- 1) 양궁: 컴파운드
- 2) 보디빌딩: 전종목
- 3) 철인3종: 남고부
- 4) 산악: 여자부(고·대·일반부 포함)
- 5)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고등부
- 6) 택견: 전종목
- 7) 검도: 여자부(고·대·일반부 포함)

* (검도) '17년 ~ '19년 기간 동안 예산 지원 및 8개 시도 이상 참가 시 정식종목 전환 검토

다. 채점대상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1개 이상의 신기록을 수립하였을 경우에는 상위 신기록을 가산 채점

라. 재외한인체육단체는 국내 17개 시도의 종합점수와는 별도로 재외한인 체육단체별로 메달순위제에 따라 순위 결정

- 1) 재외한인체육단체 종목(축구, 골프, 볼링, 테니스, 탁구, 스쿼시, 태권도, 검도, 배드민턴)을 제외한 모든 개인경기는 국내 17개 시도와 같이 대전 하되, 재외한인체육단체가 대회 경기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의 메달 수에 가산
- 2) 재외한인체육단체가 참가한 개인경기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을 경우 시도별 종합득점 합계 때 참가 시도의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

마. 동위자 메달 가산채점 점수 배점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15조」

- 1) 동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해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 메달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배점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바. 신기록 가산채점 및 자기최고기록 갱신 종목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13조」

- 1) 신기록 해당종목(8): 육상, 수영(경영), 자전거, 역도, 양궁, 사격, 롤러, 핀수영
- 2) 기준기록 해당종목(5): 육상, 수영(경영), 자전거, 롤러, 핀수영
- 역도 기준기록 도입 1년 유예(‘20년 제101회 대회부터 적용)
- 3) 자기최고기록 해당종목(2): 육상, 수영
- 4) 적용대회 및 기간
-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참가신청 마감 전일까지 수립한 기록 적용
- 5) 자기 최고기록 가산점은 해당종목의 채점순위에 입상할 경우 적용
- 6) 해당기록과 신기록 가산이 동시에 발생될 경우 상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

사. 토너먼트 및 개최지 가산 채점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 제12조, 제16조」

- 1) 16개 이상 시도가 참가할 경우 시드를 배정받은 개최지 시도에 대하여 기본점수(2.5점) 부여
- 2) 비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 「전국종합체육대회 채점 및 시상내규」에 따라 개최지 시도의 경기 종목별 종합득점에 20%를 가산 채점. 다만, 메달 점수에 대한 채점은 제외<해당종목(23): 육상, 수영, 자전거, 역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조정, 볼링, 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핀수영, 철인3종, 산악,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4

경기운영 관련 규정

가. 경기운영내규 및 참가요강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43조」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및 참가요강에 따라 운영하며, 동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 준용

나. 차기 대회 참가금지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41조」

-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 금지
- ②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도지회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반드시 제출
- ③ 위원회는 상기 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기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금할 수 있음 <신설 2018.2.5.>
-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신설 2018.2.5.>

다. 대회참가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4조」

- ① 전국대회는 체육회 각 지회가 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각 회원종목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 참가요강 적용
- ② 전국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도 미만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미만이 참가를 하였을 경우 그 해당되는 세부종목의 메달점수만 인정(획득점수만 삭제)
- ③ 전국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도이상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한 후 일부 선수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전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며, 그 불출전한 단체(선수)는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41조 적용

라. 경기 진행 중 질서문란 행위 제재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8조」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여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회본부의 결의로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일정 취소할 수 있다.**

마. 한체대, 용인대 및 군인선수 무연고지 참가 제재

한국체육대학교 및 용인대학교 선수, 그리고 군인선수의 경우 대회개막 이후 무연고지로 참가가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시도는 해당 세부종목에서 획득한 성적을 몰수 처리하며 차기대회 출전 금지**

바. 재외한인체육단체 개인종목 참가 신청 「참가요강 참가요령 4. 참가자격 사항」

재외한인체육단체에서 개인경기종목을 참가신청 할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참가 신청한 선수의 **경기력을 인정하여 대회참가를 허용할 경우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며 사·도지회 선수와 경기 실시**

5**국가대표 선수 및 군 입·제대 관련 교체****가. 국가대표 선수 소집 및 대회 참가로 인한 선수 교체: ~ 2019. 10. 2.(수), 18시까지**

* 개막전일인 '19.10.3.(목)은 공휴일(개천절)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체 마감일 조정

- 1) 본 대회에 참가 신청한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 소집 및 대회 참가하기 위해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유자격 선수로 교체 가능
- 2) 단체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 신청한 선수가 국가대표로 추가 선발되어 해당 팀의 단일팀 구성 선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자격 팀으로 교체하여 참가할 수 있음

나. 군 입·제대로 인한 선수 교체: ~ 2019. 10. 2.(수), 18시까지

* 개막전일인 '19.10.3.(목)은 공휴일(개천절)임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체 마감일 조정

- 1) 군 입대 또는 제대로 신분상의 변동이 생겨 참가 신청한 선수에 대해 교체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유자격 선수로 교체 가능

6**부상선수 교체 및 처리****가. 부상선수 교체 마감(그 외 종목): ~ 2019. 9. 27.(금), 15시까지**

- 1) 핸드볼(일반부): ~ 2019. 8. 22.(목), 18시까지
- 2) 하키(일반부): ~ 2019. 8. 26.(월), 18시까지
- 3) 체조(기계체조): ~ 2019. 9. 10.(화), 18시까지

나. 부상선수 교체 절차

- 1) 참가신청 마감 이후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유자격 선수로 교체 신청 가능

- 2) 부상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2차병원 이상에서 3주 이상 발급된 진단서를 포함하여 시도체육회가 직접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로 신청
- 3) 부상선수 진단서에 반드시 진단명, 진단일, 진단내용, 진단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제출

* 상기 내용이 없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는 접수 처리 불가

7

안전사고 예방, 도핑 및 소양 교육

가. 대회 참가 전에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도핑 및 소양 교육 실시

- 1) 식중독 등 전염병 관련 예방법 및 대처방법 등 필요시 자체적으로 관내 보건소의 협조 의뢰 후 교육 실시
- 2) 기타 경기 중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 등 예방 교육 실시
- 3) 대회운영(규정 및 경기운영내규, 참가요강, 해당 종목단체 경기규칙, 도핑검사 계획 및 치료목적사용면책(TUE)) 및 기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양 교육 등

나.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예정

- 1) (목적) 행사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
- 1) (대상) 국내 및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선수, 지도자, 임원), 개·폐회식 및 성화행사 참가자, 경기관람객, 자원봉사자, 심판 및 기타 대회운영요원
- 2) (담보내용) 행사시설 및 운영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은 추후 공문으로 통보 예정

가. 사전열람 기간: 2019. 8. 22.(목), 15:00 ~ 9. 4.(수), 15시까지

- 1) 핸드볼(일반부), 하키(일반부): 2019. 8. 9.(금), 18:00 ~ 8. 16.(금), 18시까지

나. 열람방법: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체육정보시스템 내 체전참가등록

다. 이의신청 접수 방법

- 1) 시도별 책임자가 해당종목의 참가신청 시스템에서 시도별 참가자를 열람해야하며, 해당 시도 참가자를 제외하고 타 시도 참가자의 참가가 이상이 있을 경우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이의신청선수, 참가종목, 위배내용 등)을 작성
- 2)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체육회를 경유하여 제출
- 3)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시도체육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제출 요망

라. 협조사항

- 1) 이의신청된 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조사·처리하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선수자격에 한함)를 제출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음
- 2) 종목별 경기 중에 참가신청자와 실제로 출전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소청)를 제기할 수 있음
- 3) 관련 규정 및 참가요강 참가자격 해석을 잘못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음

9**부정선수 출전 근절****가. 무자격 선수 출전 시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2조 적용**

제12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단체는 몰수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소속 사·도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10**도핑검사 계획(안)****가. 도핑검사 개요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123(2019.8.6.)호 참조**

1)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 2(선수의 도핑 검사)
-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조
-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4조

2) (목적)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며, 공정한 스포츠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함

3) (검사기간) 2019. 10. 4.(금) ~ 10. 10.(목), 7일간

* 사전 경기종목<핸드볼(일반부), 하키(일반부), 체조(기계체조), 사격(10m런닝타겟)>은 해당 경기일정 중 실시 예정

4) (검사장소) 해당 종목별 경기장

5) (검사대상) 참가선수 전원

6) (검사건수) 약 580건

나. 검사대상 선수 선정

- 1) (기본원칙) 종목 및 대상경기의 특성에 따라 등위선정, 무작위 선정, 표적검사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음
- 2) (선수선정 방식)
 - 등위선정: 경기결과에 따라 검사대상 선수가 자동적으로 선정
 - 무작위 선정: 현장 도핑검사관이 주관하여 출전 선수 명단 중 무작위 선정
 - 표적검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업무에 근거하여 특정한 선수를 선정

다. 도핑검사 및 시료분석

1) (도핑검사 배분계획)

- 세계도핑방지기구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4.2항에 따라서 세부종목별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최고위험, 고위험 등 4단계로 구분
- 고위험 종목, 국제수준 및 올림픽 종목, 단체종목에 중점적으로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중위험 및 저위험 종목은 종목 성격에 따라 적정 수준의 도핑검사 배분

* 신기록 수립 선수 또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에 대하여 표적검사 실시

2) (도핑검사 실시)

-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증 도핑검사관(DCO/BCO)이 경기장에서 대상 선수에 대하여 도핑검사 시행
- 도핑검사절차: 통지 → 동반 → 도핑검사용품선택 → 시료채취 → 시료봉인 → 서류작성

3) (시료분석)

- 도핑검사관은 시료보관전달체계서와 함께 시료를 시험실로 수송
- '시험실 국제표준'에 의거하여 시험실에서 시료분석 실시
- 시험실은 분석결과를 보안메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송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대회 주관단체에게 시료분석 결과 통보(약 30일)

라.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123(2019.8.6.)호 참조

1) (관련근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제4항

2) (신청대상) 참가선수 전원

3) (신청기간) 종목별 대회 30일 전 신청

* 응급 치료 등 예외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이 어려웠을 경우 소급신청 가능

4) (제출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조사부

- 대표메일: tue@kada-ad.or.kr / 팩스: 02-2045-9898

5) (협조사항)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관련 안내 사항에 대해 참가 신청한 선수(팀) 및 지도자, 시도교육청, 시도회원종목단체에게 홍보 요청

마. 도핑검사 위반선수에 대한 제재 「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14조」

- 제14조(도핑검사 및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 조치 등)** ①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6.>
- ②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이상으로 확정된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이하 “위반선수”라 함)는 그가 출전한 모든 경기의 기록을 박탈하며 입상메달과 상장을 참가한 시도체육회를 통해 반납하고 차기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다만, “견책”은 차기대회는 출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2018. 8. 6.>
- ③ 위반선수가 소속한 시·도선수단에 대해서도 위반선수가 얻은 점수 등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 <개정 2018. 8. 6.>
- ④ 위반선수가 박탈당한 메달, 상장, 점수 등 모든 지위는 다른 선수(팀)나 다른 시·도선수단에 일체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6.>
- ⑤ 위반선수가 참가한 경기종목은 그 다음 해에 해당 경기종목의 확정배점에서 10%를 감하여 적용하며, 최대 50%까지 감할 수 있으며 확정배점의 환원은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6.>

⑥ 개인경기 단체종목(개인종목 중 계주 등 포함)에 있어서 팀의 소속 선수가 대회기간 중 위반선수일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결과조치와 함께 위반선수의 소속팀에게도 기록 박탈, 입상메달과 상장 회수하며 차기대회는 위반선수만 출전을 금지한다. <개정 2017. 4. 28., 2018. 8. 6.>

⑦ 단체경기종목에 있어서 팀의 소속 선수 중 3명 이상의 선수가 대회기간 중 위반선수일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결과조치와 함께 위반선수의 소속팀에게도 기록 박탈, 입상메달과 상장 회수하며 차기대회의 출전을 금지한다. <개정 2017. 4. 28., 2018. 8. 6.>

⑧ 제6항, 제7항에 해당되는 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제4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4. 28.>

11

종합시상 및 종목별 시상 계획

가. 종합시상: 2019. 10. 10.(목), 18:30, 잠실종합운동장

- 1) 폐회식 행사에 종합시상식이 개최됨에 따라 시도선수단은 가급적 많은 임원과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나. 종목별 시상

- 1) 경기종목별 시상은 각 종목, 종별, 부문별 대회종료 후 해당 회원종목 단체에서 메달 및 상패를 시상
 - *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요청
- 2) 상장배부 계획(안)
 - 대회운영본부에서 대회기간 중 일자별 대회 종료 후 시도체육회 상황 실로 배부 예정
 - 마지막 날 대회 종료 예정인 종목의 경우 우승으로 시도체육회로 배부 예정

II. 대진추첨

1 주의 사항

가. 대진추첨 이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41조 (참가금지)를 엄격히 적용

2 대진추첨 조 편성

구분	종목(세부종목)	종목	세부종목
1조	검도(4), 배구(5), 태권도(48)	3	57
2조	수구(2), 럭비(2), 야구소프트볼(4), 농구(4), 유도(50)	5	62
3조	핸드볼(2), 세팍타크로(4), 스쿼시(6), 탁구(12), 복싱(31)	5	55
4조	하키(2), 택견(8), 당구(7), 우슈(8), 테니스(12), 씨름(21)	6	58
5조	바둑(4), 축구(6), 배드민턴(12), 정구(15), 펜싱(24)	5	61
6조	레슬링(68)	1	68
	계	25	361

* 핸드볼(남·여일반부), 하키(남·여일반부) 사전경기로 인해 자체 대진추첨 진행

3 대진추첨 요령

가. 대진추첨은 위와 같이 종목을 나누어 실시하되, 대한체육회 시·도 지회 순서에 따라 개최지 다음 시도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의 순으로 실시

나. 시도별 추첨에 응하는 임원은 해당 시도의 팀명과 불참, 시드 대상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여 추천에 참석

다. 팀의 선발, 혼성 등의 팀명칭은 선발로 통일 ex) 서울선발 등

라. 추천 도중 또는 추천 후에 대진표 및 팀 수와 관련된 착오와 부정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재추천 실시

마. 각 종목별로 추천 할 때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자가 필히 배석

※ 대진표는(추천 완료) 세부종목 종료 후 즉시 배포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별도 정보 제공실에서 대진표 출력 가능

Ⅲ. 개최 관련 협조 사항

가. (개최지) 서울시 전국체전기획과(개최지 체육회 포함)

구분	세부 내용
경기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시설 점검 및 경기용품 사전 확보 * 해당 회원종목단체 공·승인 관련 사전 협조 ○ 신설 경기장 연습경기 및 사전대회(여행연습) 실시
대회운영 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운영본부, 전산운영본부, 시도체육회 상황실 및 종목별 경기장 내 상황실에 전원공사 및 케이블 공사 ○ 대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임차(책상, 의자, 탁자, 캐비닛, 프린터 등) 지원
개회식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참가 시·도선수단의 수송계획 수립 및 통보
숙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행사,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재외한인체육단체 등 대회 참가 대상 관련 숙박 계획 수립·시행
안전사고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종목별 경기장 내 의료진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29조(안전사고 예방 의무) 준수
전염병 등 질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기간 중 전염병 관리 강화방안 수립 ○ 각 지역별 보건소와 연계하여 방역대책 마련(비상연락체계 구축) ○ 선수단 숙소 및 경기장에 감시 및 예방 활동 ○ 일반시민 및 관중 대상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 ○ 각 경기장, 숙소, 요식업소에 사전방역 실시

나. 시·도체육회

구분	세부 내용
열람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선수에 대한 열람확인서 제출 * 2019. 9. 4.(수), 15:00까지
선수단 도핑, 소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참가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공정성 윤리 및 도핑 교육 실시
숙박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임원 및 종목별 선수단 숙박예약 현황을 서울시 전국 체전기획과(02-2133-7672/jspark97@seoul.go.kr)에게 전달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5991(2019.7.30.)호 참조
안전사고 및 질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하는 본부임원 및 종목별 선수단에 대해 필요시 별도 스포츠상해보험 가입 요망 * 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예정 ○ 선수 소속별 보건담당자 지정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시도별 참가신청 시 임원·선수 건강상태 확인

다. 회원종목단체

구분	세부 내용
경기임원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에 수록할 종목별 경기임원의 명단 제출 ('19. 8. 26.(월)까지)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095(2019.8.5.)호 참조
ID카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종목단체별 발급대상자 명단 입력 요청 ('19. 8. 26.(월)까지)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095(2019.8.5.)호 참조
숙박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임원 및 종목별 선수단 숙박예약 현황을 서울시 전국 체전기획과(02-2133-7672/jspark97@seoul.go.kr)에게 전달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497(2019.5.16.)호 참조
경기장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경기장의 시설, 경기용 기구 사전 점검 완료 요망 ○ 종목별 경기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개최지와 협의)

구분	세부 내용
기록책임자 선임 및 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별 기록책임자를 선임하여 경기결과 입력 교육 이수 * 추후 교육 회의소집 관련 공문 협조 요청(정보화팀) - 대회운영본부(종합경기장)와 종목별 경기장 비상연락망 구축 협조 등
기준기록 확인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기록 자료입력(육상, 수영, 롤러, 자전거, 핀수영) - 사격, 양궁 기준기록 미 운영, 역도 기준기록 도입 1년 유예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024(2019.8.1.)호 참조
참가선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신청 선수 중에서 미등록 선수 등 무자격 선수 명단확인 후 우리 부로 제출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024(2019.8.1.)호 참조 ○ 한체대, 용인대 선수 및 군인선수 참가자격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우리 부로 제출 ○ 대회당일 참가선수 신분확인(ID카드 등) 절차 반드시 시행
경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결과 입력 후 정보화팀 최종 승인 요청
경기운영 시 변경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진 또는 경기일정(우천에 따른 순연 등)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 부로 신속히 통보 ○ 안전사고 및 질서문란행위(소청 등) 발생 시 우리 부로 신속히 통보
시상식 거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종료 후 시도별 종합채점이 완료되면 대한체육회 정보화팀의 확인을 거쳐 종목별 종합순위 시도에 대한 시상식 거행 요망
안전사고 및 질병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단체별 안전사고 및 보건담당자 지정 해당 단체 임·직원의 업무(개최지에서 제작한 안전 매뉴얼) 숙지 및 보건관리 ○ 개최지역 보건소 및 병원의 연락처 확보 및 연계 강화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험금 청구는 해당 소속 시도체육회를 경유하여 추진 관련 절차 추진

IV.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계획(붙임)
